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7848호, 2006. 1. 11. 공포, 2006. 7. 12. 시행)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608호, 2006. 7. 11. 공포, 2006. 7. 12.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관계법령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3. 주요골자

가.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규정(안 제1조)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세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기반시설부담금의 구 귀속분 및 국가의 보조금 등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세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기반시설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진행, 기존 기반 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검토 의견

본 조례 제정건은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06. 7. 6부로 제정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신설 필요성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 운영의 기틀을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 지난 8. 31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건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원인자, 수익자 부담원칙을 법정화 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운용을 통한 세수확보와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 또한 우리구를 비롯한 각 구·군에서도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기반 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
- 위 조례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